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2024

알아두면 쓸모있는 장수군 복지사업 모음집

contents

p_8

1. 임신·출산

- 결혼축하금 지원
- 난임부부 지원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임산부 건강 관리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의료급여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 지원
-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부모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후건강관리지원

p_19

2.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부모급여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비 무료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말검사비 지원
- 아동수당 지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지원
- 드림스타트 사업
- 북스타트 사업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 바른체형 키 성장 운동서비스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아동급식 지원
-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2024

알아두면 쓸모있는 장수군 복지사업 모음집

p_ 35

3. 청소년

- 초중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장수청소년꿈터 달빛
- 청소년활동 및 상담 지원
-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 청소년을 위한 푸드테라피
- 스포츠이용권 지원
-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바우처 지원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현물 지원

p_ 43

4. 청년

-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지원사업
- 장수 청년 레벨업(Level up) 사업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청년수당)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청년월세 한시지원

p_ 50

5. 노년

- 기초연금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노인 이미용비 지원
-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지원
- 독거노인 안전 돌봄서비스
-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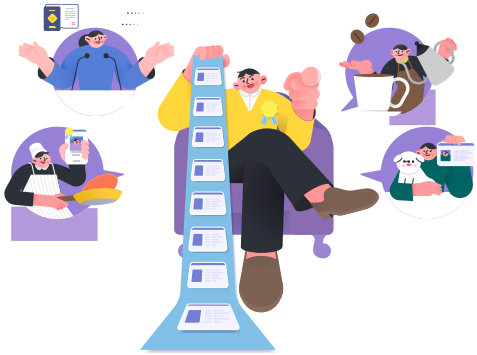

p_59

6. 기타

1) 경제적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 긴급복지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및 난방비 지원사업
-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다저녀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자산형성 지원사업

2) 주거지원

- 저소득계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3) 일자리 지원

-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 자활근로사업 지원
- 청년취업 지원사업
- 여성 취업 지원
-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 장수군 로컬 JOB센터 운영
- 자격 취득 및 실습반 운영 지원

4)의료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장애인 복지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룹형 1:1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영양 골(骨)인(in) 사업
-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
-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및 치석제거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7. 장수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지원

- 군민안전보험 지원
-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 전입세대원 지원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 금연클리닉 운영
- 장수군 주민도움센터 운영
- 행복 콜 서비스 사업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 지원
- 희망하우스 빈집 활용 임대지원
-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 화장장려금 지원
- 호국보훈수당 지급
- 전주승화원 이용
- 누리파크 어린이생활문화센터(키즈카페) 운영
- 특별교통수단 지원

장수군민 누구나

읍면사무소 방문
(맞춤형 복지팀)

↓

대상자 정보확인

↓

종합상담 실시

↙ ↘

복지서비스
- 사회보장서비스
- 사례관리

관련기관 연계
(고용노동부, 국세청)

↓

사후관리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관련기관 및 민간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신청

◇ 사회보장서비스 및 급여 종류

구 분	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 기초의료급여 • 기초주거급여 • 기초교육급여
장애인복지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노인복지	• 기초연금
영유아복지	• 보육료 • 유아학비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급여
한부모가족복지	• 아동양육비 • 고등학생자녀 학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타	• 긴급복지 • 차상위자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구 분	가구원 수					비고 (지원사업)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생계급여

1. 임신·출산

"새 생명을 기다리는
소중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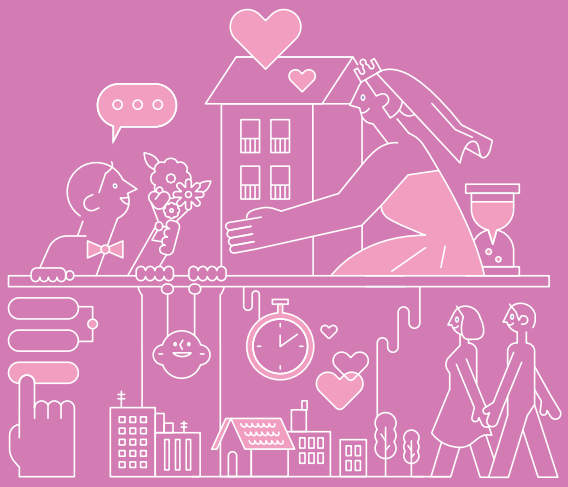

결혼축하금 지원

【기획조정실 정책팀 ☎ 350-2042】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9세 ~ 49세 이하 남녀(부부 모두)
-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1,000만원 분할 지원(3년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 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만원/3회

◇ **주의사항**
- 최초 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 전출·이혼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추가 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 미유지 시 지급 불가
- 재혼한 부부도 지원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하나 1명이라도 기지원 받았을 때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자격 충족일 : 혼인신고일자 및 부부 모두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충족일자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부부 모두 제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각서, 통장사본 (부부 중 1인 명의)

◇ **신청절차** : 읍·면 신청 → 거주확인 등 1차 검토(읍·면⇒군) → 2차 검토 후 선정결과 통보(군)
(최초 신청 이후, 경과분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난임부부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 지원횟수 : 인공(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20 ~ 110만원

구 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7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5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전북형 난임부부 추가 지원
  - · 지원범위 : 건강보험급여 시술 종료자 중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2회 추가 지원
  - · 지원범위 : 예산 범위 내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및 정부24(www.gov.kr/portal/main) 온라인 신청 (전북형 난임부부 추가 지원 신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장수군보건의료원 비치)
- 난임 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당사자 시술 동의서 등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 또는 사실혼 상태의 부부,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지 원 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 청구)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 방문 신청

임산부 건강 관리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등록 임산부(산모수첩 지참)

◇ **지원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임산부 등록 시 지급, 분만 후 6개월까지 사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이내(1갑 ~ 3갑)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후부터 5개월분
- 피부관리크림 지원 : 임신 20주 이후 튼살크림 지급
- 모유수유용품 지원 : 임신 35주 이후 수유브라 등 지급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별관 모자보건실 방문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350-2637】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수군 실거주자(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모두 장수군이어야 함)
- 임신부, 출산 수유부, 모유 수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성장부진, 저체중, 영양섭취상태가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지원내용**
- 9대 영양소가 함유된 영양보충식품 제공(우유, 달걀 등)
- 정기적인 영양교육(평가) 및 상담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영양사업실(신관 3층) 방문접수
- 접수 당일 구비서류심사, 빈혈·신장·체중·식품섭취상태 조사가 실시되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과 보호자 동반 방문해야 함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서(해당 월, 최근 월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 등록증/혼인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임신 및 출산 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첩)

의료급여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4】

◇ **지원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준** : 1, 2종 구분 없이 태아당 100만원
(장수군은 분만취약지로 2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초음파 검사 등 소요되는 진료비 지원

◇ **지원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 부터 ~ 출산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이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및 약국

◇ **이용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 대상자로 등록된 날부터 이용 가능
-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사용(1일 사용 한도액 제한 없음)
- 병·의원에서는 임산부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차감 요청

◇ **신청절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제출(대상자) → 대상자 결정, 건강보험공단 전송(군) → 대상자 자료를 병의원에 제공(건강보험공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19세 이하 산모

◇ **지원기준**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이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지원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구분	지원기간
조기진통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조기박리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구분	지원기간
분만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범위 : 병실 입원료, 식대 등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983】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임산부(장수군 거주 기간만 해당)

◇ **지원내용** : 이송 지원 교통비 최대 58만원
-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 48만원 이내(임신 10주 이후 1회 4만원, 12회 지원)
- 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지원 : 10만원(1회)

◇ **지원방법** : 본인 통장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 **신청서류** :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비 신청서(요양기관의 진료확인, 직인), 임산부 예금통장사본, 임산부의 진료 내역서 또는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임산부 퇴원비 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350-2364】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겸업 농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기준**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180일 기간 중에 최대 90일(영농작업 4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 45일 이하 포함)
- 9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가사작업은 영농작업 35일 이상을 활용한 여성농업인에 한해 35일 범위 내에서 지원
- 2개년도('23~'24)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23년도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23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 (단,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 내 90일까지 지원가능)

◇ **지원내용** :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및 상담

출산장려금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983】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근거** :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단위:천원)	비 고
첫째아	5,000(일시금+분할)	2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15개월분할
둘째아	7,000(일시금+분할)	3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20개월분할
셋째아	10,000(일시금+분할)	4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30개월분할
넷째아 이상	12,000(일시금+분할)	400만원 일시금, 20만원씩 40개월분할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산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등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신정절차** : 읍·면 신청 → 거주확인 및 확인서 구비서류 첨부 통합 전송(읍·면⇒군) →
자격 검토 및 선정 결과 통보(군)

부모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3】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또는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중 출산한 자

◇ **지원내용** :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 산모 1인 / 1,200천원 지급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및 상담 → 접수 및 지급(군)

첫만남이용권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983】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생아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이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이용범위**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과 관련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 제외

◇ **신청방법** : 출생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행복출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서 및 신청 서류와 같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983】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건강관리 바우처 제공 및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서비스 이용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이 어려운 출산 취약지역 이용자에게 장수군이 인정한 인력(이웃, 지인)을 임시적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

◇ **주의사항**
- 건강관리 바우처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건강관리 바우처 :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건강관리 바우처 : 신청서 1부, 신청인의 신분증
- 본인 부담금 지원 : 신청서 1부, 만족도 설문지,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983】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

◇ **지원기준** : 1인당 최대 20만원(1인 1개소만 이용, 지정 요양기관 1인 1회 청구)

-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경우
- 출산 후 12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건강보검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와 동일)
(* 지정 의료기관 :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한 도내 산부인과, 한방과)

-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시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 등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지, 미용비

◇ **신청기간**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가족관계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0원 소진 영수증이나 문자 캡쳐본

◇ **신청절차** : 신청 서류 제출(산모) →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 후 쿠폰 발행(의료원) → 쿠폰으로 진료(지정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지정 의료기관) → 진료비 지급(의료원)

2. 영유아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장수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 시간제 기본형 : 시간당 11,630원, 심야 · 휴일 17,440원 / 연 960시간 이내
- 시간제 종합형(가사추가형) : 시간당 15,110원, 심야 · 휴일 22,660원 /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 시간당 11,630원, 심야·휴일 17,440원 / 월 80 ~ 20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3,950원, 심야·휴일 20,920원 / 질병완치 시까지
- 기관연계서비스 : 시간당 18,600원, 심야·휴일 27,900원

※ 시간제 기본형 및 종일제 소득기준별 이용요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A형 ('17 1. 1. 이후 출생아동))		B형 ('16 12. 31. 이전 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8,724원(75%)	2,906원(25%)	9,886원(85%)	1,744원(15%)
나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3,490원(30%)	8,140원(70%)	6,978원(60%)	4,652원(40%)
다형	150% 이하	2,326원(20%)	9,304원(80%)	1,746원(15%)	9,884원(85%)	2,326원(20%)	9,304원(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100%)	-	11,630원(100%)	-	11,630원(100%)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A형 ('17 1. 1. 이후 출생아동)		B형 ('16 12. 31. 이전 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8원(90%)	1,162원(10%)	9,304원(80%)	2,326원(20%)	10,468원(90%)	1,162원(10%)
나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3,490원(30%)	8,140원(70%)	6,978원(60%)	4,652원(40%)
다형	150% 이하	2,326원(20%)	9,304원(80%)	1,746원(15%)	9,884원(85%)	2,326원(20%)	9,304원(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100%)	-	11,630원(100%)	-	11,630원(100%)

부모급여 지원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350-2129】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어린이집 미이용	➔	부모급여 (현금)지급	0세	’24년 100만원/월 (‘23년 : 70만원/월)
			1세	’24년 50만원/월 (‘23년 : 35만원/월)
어린이집 이용	➔	부모급여 (보육료)지급	0세	’24년 보육료 바우처(54만원) + 현금 46만원/월
			1세	’24년 보육료 바우처(47.5만원) + 현금 2.5만원/월

※ 종일제 아동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동 돌봄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방식** : 매월 25일, 계좌 입금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신청절차** : 주소지 읍 · 면사무소(신청) → 읍 · 면(접수) → 군(보장/결정) → 대상자 통보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비 무료 지원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 ☎ 350-2663/2664】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 국가 필수 예방접종(18종) 비용 전액 지원

◦ 결핵(피내용),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일본뇌염(생백신), TD, Tdap,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HPV, 인플루엔자, DTaP-IPV/Hib, 로타바이러스

◇ **지원방법** : 위탁의료기관 및 장수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 접종

※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에서 접종기관 확인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기저귀 : 장수군 거주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수급자 가구 또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마약중독 등)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

◇ **지원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영아(0 ~ 12개월)

◇ **지원내용** : 1인 3품목 최대 9개월 대여(한번에 3품목 동시대여 불가)

◇ **대여물품** : 아기침대(접이식), 모빌(스탠드형), 쏘서, 바운서, 보행기, 위고, 유축기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별관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대여 신청서 작성 후 수령

◇ **신청서류**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 거주자로서 당해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세대당 25만원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별관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물품구매 영수수증(상세내역 포함), 통장사본, 물품사진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1】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 **지원내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 개월)	5차 검진 (30~36 개월)	6차 검진 (42~48 개월)	7차 검진 (54~60 개월)	8차 검진 (66~71 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	●	●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
	몸무게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영양결핍(과잉)	●	●	●	●	●	●	●	●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	●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		●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	●	●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지원방법** : 건강검진표(결과) 발송 및 수령

- 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
- 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1】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근거** : 건강검진 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 **지원기준**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 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지원방식**

- (공단) 지원대상 가정에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이하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
- (보호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밀검사 안내문"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비 선 지급 후 보건소에 청구
- (보건소) 정밀검사 결과 확인 후 보호자에게 검사비 지급

◇ **신청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중 발달지연 의심 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에 위치한 읍 · 면사무소,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특수교육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 (보호자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발달지연 의심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시 동 서비스 신청 가능)

아동수당 지원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350-2129】

◇ **지원대상** :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 **지원방식** : 매월 25일, 계좌 입금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8세 미만의 아동의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청) → 읍·면(접수) → 군(보장/결정) → 대상자 통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350-2128】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 단가 〉

(단위: 원)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0세반	540,000	- (0~2세반) '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 (3~5세반) '23년 지원단가 동일
1세반	475,000	
2세반	394,000	
3~5세반**	280,000	

〈 연장보육료 시간당 단가 〉

(단위 : 원/시간당)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영아반)	1,000	3,000

- 기본보육 : 오전 9시부터 ~ 오후 4시까지 운영
- 연장보육 : 오후 4시부터 ~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
- 연장보육 자격 기준 : 취업, 다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족, 장애, 임신, 유산,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원방식** :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 등으로 입금

◇ **신청기간**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청) → 읍·면사무소(접수) → 군(보장/결정) → 대상자 통보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지원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350-2129】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가정 양육 아동

◇ **지원내용**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24 ~ 86개월 미만 (취학 전)	100천원	24 ~ 35	156천원
		36 ~ 47	129천원
		48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0천원

※ 농어촌양육수당 자격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격자

◇ **지원방식** : 매월 25일, 계좌 입금

◇ **지원기간** :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청) → 읍·면사무소(접수) → 군(보장/결정) → 대상자 통보

드림스타트 사업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350-2127】

◇ **지원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특화대상 :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선정기준** : 장수군 관내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아동으로 선정

◇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에게 직접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및 현황조사를 위한 주기적 면담
  - 드림스타트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 아동 모두 가정방문 대상
- 필수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 영역별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 제공기준 :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주기에 따라 필수서비스를 각 1회 이상 제공
  - 제공방법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활용 가능
    - 관련 서비스 기관에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서비스 기관의 강사를 드림스타트 또는 특정 장소(가정,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실시
  - 아 동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폭력예방 교육 등(8종)
  -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2종)
  - 부 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1종)
- 맞춤서비스 : 지역자원 및 대상아동의 문제 및 욕구를 고려하여 대상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 지원
- 기타 서비스 : 후원 개발로 물품 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청 드림스타트팀 신청
- 직접신청 : 전화 및 방문
- 의 뢰 : 읍·면사무소 및 유관기관(학교,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이장 등)

북스타트 사업

【문화관광과 도서관팀 ☎ 350-2333】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둔 0 ~ 72개월 영유아

◇ **지원기준** : 관내 200명(선착순 지원)

◇ **지원기간** : 2024. 1월 ~ 책꾸러미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가방, 그림책 2권, 가이드북, 스케치북)

◇ **신청방법** :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6개소(장수, 산서, 번암, 천천, 계북, 계남)

◇ **신청서류** : 보호자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건강보험증사본)

◇ **신청절차** : 구비서류 지참, 도서관 방문 → 신청서 및 부모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
대상자 확인 → 배부통보(군)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3】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6세 이하 영유아

◇ **지원내용** : 조기선별과 중재를 통해 '발달지연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언어/인지/정서 및 사회성 발달의 정상화

◇ **서비스단가** : 월 200천원

◇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 없음)

◇ **지원액/본인부담액** : 1등급 180천원/20천원, 2등급 160천원/40천원, 3등급 140천원/60천원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2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3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5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 **제공기관** : 해맑은아동심리발달센터(☎ 063-351-5475)
한걸음정서발달지원센터(☎ 063-351-2980)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3】

◇ **지원대상** : 6세 이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활동 등 프로그램 이용

◇ **서비스시간** : 월 66시간

◇ **서비스기간** : 보장결정 이후 자격상실 시까지

◇ **지원액**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 **제공기관** : 해맑은장수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센터(☎ 063-351-5475)
나눔과행복사회적협동조합장수군지부(☎ 063-352-7297)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2073】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7세 ~ 16세 아동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도 포함)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단가** : 140천원(월)

◇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 **지원액/본인 부담액** : 1등급 126천원/14천원, 2등급 112천원/28천원, 3등급 98천원/42천원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2등급 :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3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 **제공기관** : ㈜늘푸른교육(☎ 063-714-3317)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3】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7세 ~ 16세 아동
(단,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중인 경우 6세 이하거나 17세 이상도 가능)

◇ **지원내용** : 체계적인 진단 및 운동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체균형을 향상시켜 건강증진 도모

◇ **서비스단가** : 200천원(월)

◇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 **지원액/본인 부담액** : 1등급 180천원/20천원, 2등급 160천원/40천원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2등급 :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 **제공기관** : 바른체형키성장운동재활연구소(☎ 010-3126-9585)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350-2126】

◇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시 설 명	시설장	정원	소재지	전화번호	이용요금
2개소		48			
계북 다함께돌봄센터	이경미	28	계북면 문성길 4	352-2022	4만원/월
천천 다함께돌봄센터	김영신	20	천천면 송찬로 11	352-0649	4만원/월

◇ **이용시간** (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 14:00 ~ 20:00
- 방학(단기방학 포함) : 09:00 ~ 18:00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 ~ 12세(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신청방법** :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돌봄서비스 신청

◇ **신청절차** : 대상자 발굴 및 신청(다함께돌봄센터) → 상담 및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
서비스 제공(다함께돌봄센터) → 사후관리 및 확인(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350-2126】

◇ **지역아동센터 현황**

시 설 명	시설장	정원	위치	전화번호	비고
7개소		206			
다솜지역아동센터	권경주	29	장수읍 덕산로 16, 2층	353-9053	
대성지역아동센터	임성자	29	장수읍 장천로 143	351-4833	
1318해피존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박천숙	29	장수읍 장천로 220 2층	351-1813	
장수지역아동센터	이선미	29	장수읍 덕산로 10	352-1255	
산서지역아동센터	정영덕	29	산서면 신덕길 9-4	351-7123	
번암지역아동센터	김영순	29	번암면 동강길 6	353-3702	
한우리지역아동센터	박영자	32	장계면 성곡길 6	352-2280	

◇ **이용시간** (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 14:00 ~ 20:00(필수 운영 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12:00 ~ 17:00(필수 운영 시간) **이용요금 : 무료

◇ **이용대상**

- 우선돌봄 아동 :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 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아동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의 70%이내)
- 돌봄특례아동 :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청

◇ **신청절차** : 대상자 발굴 및 신청(읍·면/지역아동센터) → 접수, 자격확인 및 서비스 제공 결정 (군⇒지역아동센터) → 서비스 제공(지역아동센터) → 사후관리 및 확인(군)

아동급식 지원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350-2127】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18세 미만인 학교 밖 아동 및 18세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원가능)

◇ **지원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급식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정 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⑥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원내용**
- 학기중 : 1인 1식, 토·일·공휴일
- 방학중 : 1인 1식, 방학 기간중
- 연중 : 1인 1식 또는 2식, 365일

◇ **지원형태** : 도시락 또는 부식 배달

◇ **지원단가** : 1식 9,000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읍·면) → 소득·가정환경 조사 → 조사결과 송부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급식지원업체 급식 지원

※ 참고(급식 지원 단체별 제공 현황)

제공기관	급식 제공 지역
밀알봉사회	장수, 번암
함께 나누는 세상	산서
장수시니어클럽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350-2129】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국가 매칭은 없음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용도 사용
  - 만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24세 도달 시 사용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신청절차** : 대상자는 읍·면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자 자격 조사(읍·면) → 신규통장 개설 요청 (군⇒신한은행) → 신규통장 계좌개설 및 통장 송부(신한은행⇒군⇒신청인) → 저축(신청인 → 적립금 지원(정부지원) → 사후관리(읍·면, 군)

3. 청소년

"청소년의 빛나는 미래를 지원합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장학금 등 지원

◇ 고등학교 성적 우수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생 2~3학년이면서 직전년도 내신성적이 1~3등급 이내 학생
- 지원기준 : 주소지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등급 50만원, 2등급 30만원, 3등급 20만원
- 신청방법 : 2024년 장학금 지원공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 신청

◇ 지역고교 입학우수자 장학금

- 지원대상 : 지역고교 입학성적 우수자
- 지원기준 : 주소지 제한없음
- 지원내용 : 학교장이 추천한 관내고 입학우수자 장학금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학교장 추천

◇ 관내 중·고등학생 인터넷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진학예정자
- 지원기준 : 주소지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진로캠프, 개인별 학습컨설팅,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 모집공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 신청

◇ 초등생 영어, 수학 학습 지원

-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
- 지원기준 : 주소지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읍·면별 영어, 수학 교실 지원
- 신청방법 : 모집공고 후 읍면 학습 교실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 신청

◇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 지원금

- 지원대상 : 대학을 비진학(졸업연도)하고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학원을 수강하는 학생
- 지원기준 : 보호자의 주소가 연속 2년 이상 장수군 거주
- 지원내용 : 국비 등 보조를 받고 있는 학원비를 제외한 3개월 학원비의 반값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2024년 장학금 지원공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 신청

◇ 대학생 반값등록금

- 지원대상 : 연속 2년 이상 장수군 내로 주소가 되어있는 장수군민의 대학생 자녀
- 지원내용
  - 관내고 졸업생(4년), 관외고 졸업생(신입생 1년) 반값등록금 지원
  - 1인당 학기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 신청방법 : 2024년 장학금 지원공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 신청

초 · 중 · 고 · 대학생 장학금 등 지원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 351-2567】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 350-2166】

◇ 대학생 주거비지원 장학금

◦ 지원대상 : 장수군민의 대학생 자녀
◦ 지원기준 : 아래 요건 2개 모두 충족 필요
- 보호자의 주소가 연속 2년 이상 장수군 거주
- 대학교(2~4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년 성적이 C학점 이상

◦ 지원내용 : 장수군민 대학생 자녀 대상 주거비 지원
◦ 신청방법 : 2024년 장학금 지원공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 신청

◇ 희망 장학금

◦ 지원대상 : 연속 2년 이상 장수군 내로 주소가 되어있는 저소득층 장수군민의 대학생 자녀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대학생(2～4학년) 자녀 대상 생활비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2024년 장학금 지원공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 신청

◇ 특기 장학금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2개 모두 충족
-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분야별 협회(연맹)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연속 2년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단체 / 전국대회〉 1위 300만원, 2위 200만원, 3위 100만원
- 〈단체 / 도대회〉 1위 200만원, 2위 100만원, 3위 50만원
- 〈개인 / 전국대회〉 1위 100만원, 2위 70만원, 3위 50만원
- 〈개인 / 도대회〉 1위 7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

◦ 신청방법 : 2024년 장학금 지원공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 신청

◇ 예체능 문화인재 육성 장학금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2개 모두 충족
-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동일분야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 실적을 2회 이상 보유한 자 (포트폴리오 제출)
- 보호자 중 1명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연속 2년 이상 거주

◦ 지원내용 : 연간 200만원
◦ 신청방법 : 2024년 장학금 지원공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방문 신청

장수청소년꿈터 달빛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 350-2167】

◇ **이용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운영목적** : 학생·청소년 자치활성화, 배움과 놀이공간, 민주시민교육,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

◇ **시설위치** :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0
- 1층(쉼과 놀이 공간) : 사무실, 전시홀, 북카페, 공유주방, 달빛카페, 코인노래방, 야외테라스
- 2층(동아리와 자치 활동 공간) : 멀티실, 방송스튜디오, 편집실(집중/그룹), 소규모활동실, 자유토론실, 동아리실, 당구장
- 3층(문화·체육공간) : 다목적실, 체육활동실, 헬스장, 영상미디어실, 밴드실

◇ **시설운영**

시 설 명	학기중	방학중
일, 월	휴 관	휴 관
화 ~ 금	09:00 ~ 21:00	09:00 ~ 21:00
토	09:00 ~ 20:00	09:00 ~ 20:00

※ 공휴일은 휴관, 상황에 따라 개관함

◇ **시설문의** : 장수청소년꿈터 달빛(063-353-8891)

청소년 활동 및 상담 지원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350-2102】

◇ 청소년문화의집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1 (장수군여성 · 청소년문화센터 1층)

◦ 이용대상 : 9세 ~ 24세 이하 청소년

◦ 이용시간 : 월 ~ 토 09:00 ~ 18:00

◦ 주요 프로그램 :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문화 공간 제공 및 자치활동 지원

· 상시 이용공간 : 미디어실, 노래방, PC, 포켓볼, 집회장 등(자율이용)

· 청소년문화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의 달 행사, 토요 일일체험 및 방학특강 등

· 참여기구 :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동아리, 자원봉사단 등

◦ 문 의 처 : ☏ 351-794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수읍, 장계면)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1 (장수군여성 · 청소년문화센터 1층)

· 장수군 장계면 방천길 15 (장계면 논개골행복나눔터 2층)

◦ 이용대상 : 지역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 주요 프로그램 : 청소년들의 욕구와 문제에 기초한 상담, 지원 및 예방적 서비스 제공

· 상담지원 :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부모교육, 장수골청소년문화제,
가족소통강화프로그램, 학습코칭프로그램, 심리검사교실, 성폭력예방교육

· 청소년안전망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 학습 · 법률 · 자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 사회로의 복귀 지원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 고위기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자살·자해 위험성 완화

◦ 문 의 처 : ☏ 350-2103(장수읍), ☏ 350-2109(장계면)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350-2102】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
- 자격기준 : 주민등록상 장수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 연령기준 : 13세~18세 (24년 기준 : 2006. 1. 1. ~ 2011. 12. 31. 출생자)

◇ **지원기준** : 200천원/년, 반기별(1, 7월) 포인트 제공

◇ **지원내용** : 청소년에게 문화·여가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포인트 지급

◇ **사 용 처**
- 전액사용 : 서점, 문구점, 이·미용실, 병원·약국, 영화관 등
- 40% 제한사용 :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등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절차** : 읍·면 신청 → 군 접수 → 군 대상자결정 → 대상자 통보 → 포인트지원

청소년을 위한 푸드테라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3】

◇ **사 업 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청소년을 위한 푸드테라피)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10세~18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드를 매개로 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 없음)

◇ **서비스단가** : 160천원

◇ **지원액/본인부담액** : 1등급 144천원/16천원, 2등급 128천원/32천원, 3등급 112천원/48천원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2등급 :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3등급 : 중위소득 120%초과 ~ 16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 **제공기관** : 교육협동조합마을학교 (☎ 070-4123-1121)

스포츠이용권 지원

【체육맑은물사업소 체육진흥팀 ☎ 350-288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구,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 5 ~ 18세(2006 ~ 2019년생)

◇ **지원기준** :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10개월 지원)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유 · 청소년의 관내외 스포츠이용권 지원 시설이용 비용지원

◇ **이용시설** : 태권도장수체육관, 장계(부부)태권도교육관, 우리아이태권도

◇ **이용기간** : 2024. 1. ~ 12.(12개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 서면신청 : 장수군청 체육맑은물사업소 체육진흥팀 방문신청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바우처 지원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350-2102】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연령기준 : 9세~24세 (24년 기준 : 2000. 1. 1. ~ 2015.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구입 바우처 반기별 78,000원 지급

◇ **신청방법** :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 · 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① 서비스 신청	② 접수 · 및 상담	③ 대상자 확정 · 통보	④ 카드신청 (카드사, 은행)	⑤ 카드 발급	⑥ 구매 (온오프라인)
이용자	읍 · 면	군	이용자	카드사	이용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현물 지원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350-2102】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주민등록상 장수군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 11세~18세 (24년 기준 :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 **제외대상** :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바우처 지원 사업대상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준** : 39,000원/분기, 위생용품 분기별(3, 6, 9, 12월) 배송

◇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현물지원(각 가정별 배송)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절차** : 읍 · 면 신청 → 군 접수 → 군 대상자결정 → 대상자 통보 → 위생용품 지원

4. 청년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지원사업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2】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에 실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 청년, 49세 이하의 신혼 부부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 **세부자격요건**

구분	청 년	신혼부부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미혼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 (부부 모두 49세 이하)
거주	공고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 (신혼부부의 경우 2인 모두)	
소득 자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 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주거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 또는 월세 입주자로 무주택자(85㎡이하 주택)	
지원	호당 최대 100만원 / 연1회, 최대 3년 전세입주자 : 대출잔액의 2% 이내 이자 /월세입주자 : 연간 임차료의 30% * 다음연도 사업 신청 시 '기 선정자'는 연속하여 주소지(중간 전출·전입 불가) 유지하여야 신청 가능	
* 제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 사업 지원을 받고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 수급권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 - 장수군 주거지원사업 참여자(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귀농인의 집 입주 등) - 이 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주택 소유 및 분양권(입주권)을 소지한 자	

◇ **신청절차**

① 사업공고 및 홍보	② 신청 및 접수	③ 접수 결과 제출
(군청 게시판, 공지사항 등)	(읍·면 신청 접수)	(읍·면 → 군)
④ 대상자 선정	⑤ 지급 자료 생성 및 지급	⑥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자격요건 등 확인 후 선정)	(군→ 신청자)	(부정수급 발견시 환급 조치 등)

장수 청년 레벨업(level up) 사업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하고있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기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규모** : 30,000천원(1개 단체·기업당 10,000천원 지원) / 총 3개 단체·기업 선정

◇ **세부자격요건**

- 대표가 청년이고, 사업참여 구성원의 청년비율이 50%이상으로 구성
- 신청일 기준 단체 명의의 보조금 통장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이 있는 청년단체·기업
- 제안한 사업을 기간동안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공간, 시설, 인적 자원, 경험)을 갖추고 있는 청년단체·기업

※ 청년단체·기업이 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원받은 동일 내용의 사업으로는 신청 불가

◇ **지원분야** :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 상품·우수아이템 개발, 관광·숙박, 기후·지역발전 등
(※ 사업 추진 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한 외부 참여·참가자 모집 필수)

◇ **분야예시**

지원분야	목 적	예 시
문화·예술·공연	완성도 있는 문화·예술·공연 혹은 제작을 통한 주민에 향유 기회 제공	· 정기 야외 공연 및 전시, 제작, 기획
상품·우수아이템 개발	청년 단체·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수익화	· 사과·소·말산업 부산물을 이용한 상품 제작 등
관광·숙박	장수군 환경·특성·자연을 활용한 관광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수익 창출	· 참가자 모집을 통한 시골 체험, 산골 캠핑 등
기후·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 환경 등 지역의 당면 문제 해결	· 제로웨이스트 체험, 외지 청년 한달살기 사업 등
기타	청년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한 다양한 사업 내용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청년수당)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4】

◇ **지원대상** :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이력있는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 이하

◇ **지원기준**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액 중위소득 180%이하 이며 농·어·임업인, 문화예술인, 중소기업, 연구소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이력 및 증명 가능자

◇ **지원내용** : 월 30만원, 12개월 간 최대 360만원 지원 (포인트)

◇ **주의사항** : 연중 배정인원 초과 신청 시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 및 지원자 선별
- 1차 심사 : 나이, 거주기간, 소득기준 등 요건심사
- 2차 심사 : 자기소개서, 지원금 활용계획서 등에 따른 정성평가
- 선정예정자에 대한 자료 진위 및 중복사업 조회 후 확정

(중복사업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체유사사업 등)

◇ **신청방법** : 모집 공고 시 신청 및 시스템 등록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① 사업공고 및 홍보	② 신청 및 접수	③ 대상자 심사·선정·통보 대상자 사전교육
(도 및 시군)	(청년 → 온라인 시스템)	(시군, 온라인 시스템)

④ 카드발급 및 포인트 지급	⑤ 사업추진	⑥ 모니터링 및 계속 지원 포인트 지급(분기) 사후관리 등
(은행, ㈜현대이지웰 →청년)	(청년)	(시군)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4】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인 18세 ~ 39세 미취업자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지원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나 이) 2023.12.31. 기준 18세 ~ 39세 이하인 자(1984.1.1. ~ 2005.12.31.일 출생자)
- (학 력)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자
- (미취업) 실업자 또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경우
- (가구소득) '23.10 ~ 12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액 중위소득 150%이하

◇ **제외대상** : 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앙 및 시군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 직접일자리 사업 등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구직활동교육 프로그램 연계, 생애 1회)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

◇ **신청절차**

① 사업공고 및 홍보	② 신청 및 접수	③ 대상자 심사·선정·통보 대상자 사전교육
(도 및 시군)	(청년 → 온라인 시스템)	(시군, 온라인 시스템)

④ 카드발급 및 포인트 지급	⑤ 대상자 구직역량강화 교육	⑥ 모니터링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매월), 사후관리 등
(은행, ㈜현대이지웰 → 청년)	(전북청년허브센터 → 청년)	(시군)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4】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계속(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청년

◇ **지원기준**

- (거 주 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나 이) 2023.12.31. 기준 18세 ~ 39세 이하인 자(1984.1.1.~2005.12.31.일 출생)
- (근로능력) 공고일 이전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가구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 전라북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중인자
- 본 사업(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지원내용**

- 적금상품 : 본인 납입금* 적립 시 동일 금액 지방비 매칭(2년 만기)
  (* 최초가입시 5만원과 10만원 정액금액 중 선택)
- 금융교육·컨설팅 : 종합금융상담, 소득지출관리,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및 컨설팅(온·오프라인)
-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 **지원기간** : 2023. 04. ~ 2024. 12.(2년 만기)

◇ **신청절차**

지침 마련 및 시군 사업규모 배정	신청서 접수	선정심사	적금계좌 개설	사후관리 (지원금 지급, 교육컨설팅 등)
도	읍·면·동	읍·면·동, 시군, 도	전북은행	도, 시군, 청년허브센터
2월	3월(2.27.~4.4.)		4월	계좌 개설 ~ 적금 만기까지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2】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89명(전북특별자치도 전체)

◇ **지원기준**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지원내용** :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타 보험 중복 보상 가능)

◇ **지원기간** : 군 복무 기간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 전역과 동시에 자동 탈퇴

◇ **신청방법** : 상해 발생 시 수행기관 보험사 청구

◇ **수행기관** : 보험사(메리츠 화재, KB손해 보험)

청년월세 한시지원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2】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관내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지원기준** :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 (부모 등) 소득•재산 고려

구 분	청년독립가구[1]	원가구[2]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1]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2]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지원기간** : 2024년 ~ 2026년(2년)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4. 3월중

5. 노년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장수군"

기초연금 지원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350-2115】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304.8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반영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금융재산공제 : 2,000만원 (가구별)
- 기본재산액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지원내용** : 매월 25일 수급자 본인명의 금융계좌에 지급(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단독 수급 시 : 최소 33,480원 ~ 최대 334,810원
- 부부 수급 시 : 최소 66,960원 ~ 최대 535,680원 (20% 감액)

◇ **신청권자** : 연금수급희망자(본인), 대리인

◇ **신청기간** : 연중 신청(65세 신규 도래자는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

◇ **처리기간** : 접수일 포함 30 ~ 6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주소지 무관) 방문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350-2113】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기초연금 비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지원내용** : 노인일자리 참여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유형	참여기간	활동시간	지원내용	비고
공익활동	11개월	월 30시간	월 290천원	
사회서비스형	10개월	월 60시간 ~	월 634천원 (주휴 · 연차수당 별도)	
시장형	연중	사업단 운영규정		
취업알선형	연중	해당기업과의 근로계약서로 정함		

◇ **신청방법** : 수행기관 신청접수

◇ **수행기관**

기관명	대 표	주 소	연락처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허기태	장수읍 신천로 79	351-2265
장수시니어클럽	김숙희	장수읍 노하숲길 108-15	352-3335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3】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6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은퇴자 및 노인에게 문화여가 증진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단가** : 160천원

◇ **서비스기간** : 12개월(읍·면 거주자에 한하여 재판정 인정)

◇ **지원액/본인부담액** : 144천원/16천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제공기관**

- 아띠건강문화교육지원센터 (☎010-4602-7595)
- 마음힐링상담센터 (☎063-352-7582)

노인 이·미용비 지원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350-2115】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노인 이미용비 지원(반기별 60천원, 연 120천원)

◇ **지원절차** : 수혜대상자 파악(읍·면) → 대상자 결정(군) → 이미용권 배부(읍·면) → 대상자 수령

◇ **협약 이·미용 업소 현황** : 55개소(이용업 14개소, 미용업 37개소, 네일 4개소)

구분	계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55개소	25	5	2	20	1	1	1
이용업	14개소	4	2	1	6	0	0	1
미용업	37개소	19	3	1	12	1	1	0
네일	4개소	2	0	0	2	0	0	0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350-2115】

◇ **지원대상** : 작은목욕탕이 없는 5개면(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취약계층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반기별 36천원, 총 72천원)

◇ **지원절차** : 수혜대상자 파악(읍·면) → 대상자 결정(군) →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배부(읍·면)
→ 대상자 수령 및 사용

◇ **협약 목욕장 업소 현황**

연번	업 소 명	대표	소 재 지	비고
1	창명사우나	박천생	장계면 동동천변길 4	
2	나봄온천	서동해	천천면 승마로 1005-24	
3	장수읍 작은목욕탕	장수군수	장수읍 시장로 17	
4	산서면 작은목욕탕	장수군수	산서면 비행로 39-6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350-2113】

◇ **지원대상**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지원유형** : 무료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 **지원내용**
- 무료경로식당 : 중식 및 대체식 제공 / 연 300회
- 재가노인식사배달 : 도시락 및 대체식 제공 / 연 365회

◇ **지원절차**
- 무료경로식당 : 장수노인복지관 신청 → 자격요건 확인(복지관) → 대상자 선정
- 재가노인식사배달 : 읍 · 면 신청 → 실태조사(군) → 대상자 선정

◇ **무료경로식당**

수행기관	대 표	주 소	연락처
노인복지관(장수읍)	정호영	장수읍 노하 3길 16	353-8288
노인복지관(장계면)		장계면 백화로 60	784-760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지원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 ☎ 350-2663/2664】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전액 지원

◇ **지원방법** : 장수관내 의료기관 및 장수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 접종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 ☎ 350-2663/2664】

◇ **지원대상** : 60 ~ 64세 장수군민,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60 ~ 64세 장수군민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접종비 무료
- 65세 이상 어르신 : 보건의료원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무료

◇ **지원방법** : 위탁의료기관 지정 병·의원 및 장수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 접종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지원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350-2111】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이하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자(1 ~ 5등급)

◇ **지원내용**

종 류	대 상	내 용
시설급여	1 ~ 2급, 3 ~ 5급 시설판정	시설입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가정생활)
재가급여	1 ~ 5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 **주의사항** : 대상 및 이용시설별 본인 부담금 발생

구분	요양시설 입소	재가시설 이용
일반 대상자	시설급여의 20%	재가급여의 15%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시설급여의 8%	재가급여의 6%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무료

◇ **신청시기** : 연중 접수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 **신청절차** : 서비스신청(본인, 대리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공단직원)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관내장기요양기관** : p128 참조

독거노인 안전 돌봄서비스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350-2115】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 독거노인 생활모니터링(안부·안전확인) 및 이력관리
-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 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지원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서비스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군)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 **수행기관** :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063-353-8288)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350-2115】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 90세 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지원

◇ **지원내용** : 노부모 1인당 월 3만원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실태조사(군) → 대상자 선정(군)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

【민원과 마을경관팀 ☎ 350-2296】

◇ **지원대상** : 2년 이상 관내 거주자 중 만 90세 이상(1934.12.31.일 이전 출생) 부모 부양가구

◇ **지원내용** : 주택 내의 편의시설이 원칙(출입로, 외부화장실 등 가능), 고령자 불편 시설보수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제외, 부수적인 공사는 가능)

◇ **제외대상** : 3년 이내에 유사·중복지원을 받은 자(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가능)

◇ **지원기준** : 동당 400만원 지원(2024년 지원물량 5동)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6. 기타 복지서비스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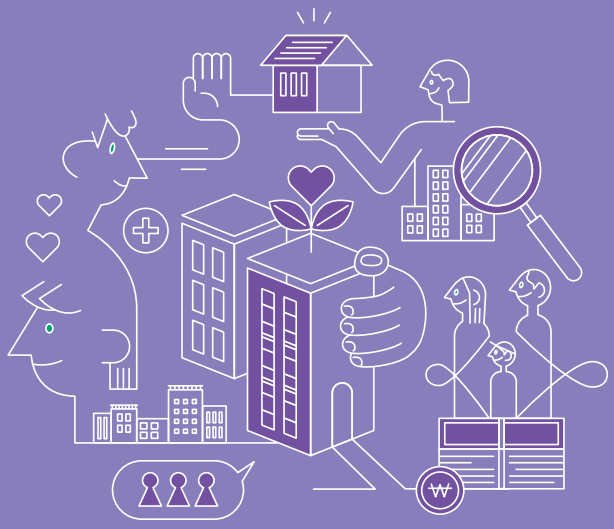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350-2091】

◇ **지원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지원기준** :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소득인정액 기준(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미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적용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미적용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미적용

◇ **주의사항** : 생계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자 인 경우 부양의무 기준 적용

◇ **지원내용**

보장명	급여명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매월 20일 생계급여 지급(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생계급여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면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주거급여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현물 지원) ◦임차가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해산급여	◦출산여성(사산 포함) 1인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1인 80만원 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가구원수 1인당 / 월 10㎏ 양곡지원

구 분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2,500원	10,000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350-2106】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으로 가구 구성원에 따라 구분
- 저소득 한부모 :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조손가족 : 조부 또는 조모가 부모부양을 받지 못하는 조손(이혼, 유기 등)을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지원기준** : 가구형태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구 분		소득인정액 기준(원)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60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350-2106】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65%이하인가족으로서, "부"또는"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또는"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자립지원

지원종류	지 원 내 용	비고
월동비	• 가구당 20만원	연
피복비	• 가구당 10만원	연
부교재비	•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7만원	연
교통비	• 중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24만원	연
수학여행비	• 중 · 고등학생 자녀 중 수학여행 참여자 1인당 최대 30만원 * 교육청 지원금 차감한 금액 지원	연
대학입학지원금	• 자녀 또는 청소년 한부모의 대학입학시 1인당 100만원 * 중복 지급 제한 기준 요건 확인 후 지원	연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실비지원(무상교육학교 제외 학교)	연

긴급복지 지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4】

◇ **지원대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 130백만원 이하

* 단 주거용 재산 공제(농어촌 기준 35백만원)

◦ (금융재산) 가구별 선정기준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긴급복지 지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4】

◇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500원 (4인 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0,000원 이내(회)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50,500원 이내 (농어촌 3 ~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94,100원 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분기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 4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150,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 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지원절차

지원요청 (읍 · 면) » **현장확인 (읍 · 면, 군)** **긴급지원 (군)** » **사후조사 (읍 · 면, 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350-2319】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8.12.31일 이전 출생)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 개인당 1매 13만원(스포츠강좌 이용권 중복수혜 가능)

◦ 지원기간 : 카드발급일 ~ 12.31일까지

◦ 사 용 처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영화, 공연, 도서, 여행, 숙박, 시외버스 등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이용 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 **신청기간** : 연중 2월 1일 ~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신청

◦ 홈페이지 발급은 본인인증수단(핸드폰, 공인인증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카드를 기 발급받아 사용하신 분은 지원기준 대상에 해당되면 동일 카드에 재충전하여 사용 가능(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 1544-3412 재충전)

◇ **신청절차**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작성 → 신청서 접수(읍·면) → 대상자 확인(읍·면) → 카드 시스템 등록(읍·면) → 카드 발급(읍·면사무소⇒대상자) →

카드사용 : 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 가맹점)

→ 카드 사용료 지급(문화예술위원회⇒가맹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및 난방비 지원사업

【민생경제과 에너지정책팀 ☎ 350-2208】

□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증중 · 희귀 · 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포함세대

◇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등유나눔카드 수급자, 연탄쿠폰 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단위 : 원)

구 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248,200	334,800	445,400	583,600
계	277,800	379,000	510,900	677,100

※ 상기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저소득층 난방유(등유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 **지원내용** : 등유나눔카드 지원(세대당 331,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 **지원대상** :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 **지원내용** : 연탄쿠폰(전자카드) 지원(세대당 472,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재무과 세정팀 ☎ 350-2309(취득세), 2216(자동차세)】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포함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지원기준**

◦ 자동차 명의
· 단독 명의 : 본인
· 공동 명의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해야 함.)

◦ 감면대상 자동차
· 승용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 10인승
· 승합차 : 15인승 이하
· 화물차 :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지원내용**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보철용·생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를 2024.12.31.까지 면제

◇ **유의사항**

◦ 보철용·생업용으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소유의 경우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고 세대 분리기간 자동차세가 부과

◇ **신청서류**

◦ 취득세 신고납부 시 「감면신청서」 및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 공동명의로 등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재무과 세정팀 ☎ 350-2309】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지원기준**

- 승용차 : 7인승 ~ 10인승 / 7인승 ~ 10인승 외의 승용자동차(*최대 140만원까지 면제)
- 승합차 : 15인승 이하
- 화물차 :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지원내용** : 취득세 면제

◇ **주의사항** : 양육 목적으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 **신청서류** : 취득세 신고납부 시 「감면신청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자산형성 지원사업

구 분		기존 통장(신규 가입 불가)					신규 통장(신규 가입 가능)			
		희망 키움 통장 I	희망 키움 통장 II	내일 키움 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 저축 계좌	희망 저축 I	희망 저축 II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이하	차상초과
근로활동		O	O	자활 참여자에 한함	O	O	O	O	O	O
연령 요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만 15 ~39세	만 15 ~39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만 15 ~39세	만 19 ~34세
가입 대상	생계	O	×	자활근로 참여자	O	×	O	×	O	×
	의료	O	×		×	×	O	×	O	×
	주거·교육	×	O		×	O	×	O	O	×
	차상위	×	O		×	O	×	O	O	×
	차상위 초과 (50~100%)	×	×	×	×	×	×	×	×	O
본인 저축액		5/10만	월 10만	5/ 10/ 20만	본인 저축 없음	월 10만	월 10만원 이상			
정부지원		소득 비례 * 월 평균 33.4만원	1:1 매칭	1:1 매칭	소득 비례 * 월 평균 30만원	1:3 매칭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민간매칭 (최대 월 2만원)	–	자활사업단 매출액 (평균22 만원)	근로소득공제 월10만원, 민간매칭 (최대 월 2만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적용 * 민간매칭, 자활사업단 매출, 공제 등			
3년 후 평균 수급액	정액		720만원 + 이자	2,232 만원 + 이자 * 최대 2,340 만원		1,440 만원 + 이자	1,440 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440 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소득 비례	1,695만원 + 이자 * 최대 2,757만원			1,569만원 + 이자 * 최대 2,314만원					
3년 후 수급 요건	교육	×	O	O	×	O	×	O	O	O
	사례관리	×	O	O	×	×	×	O	×	×
	국가자격증	×	×	×	×	O	×	×	×	×
	탈수급	O	×	O	O	×	O	×	×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민원과 마을경관팀 ☎ 350-2296】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연중 사업량 28동 이내

◇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의 주택 수리비 동당 최대 600만원 지원(재료비, 인건비 포함)
-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절감(그린리모델링) 사업 우선 지원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
- 지붕·벽체·부엌·화장실·창호공사, 방수·도장·도배·장판 등 개보수 및 방범안전시설 설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청) → 군(접수) → 군(조사/결정) → 대상자 통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민원과 마을경관팀 ☎ 350-2296】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제외대상** : 3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은 자
(주택개량, 수선유지, 저소득층 등,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가능)

◇ **지원기준** : 연중 사업량 10동 이내

◇ **지원내용** : 주택 개조비용 동당 최대 380만원 지원(재료비, 인건비 포함)
- 주택 내의 편의시설이 원칙(출입로, 외부화장실 등 가능)
- 장애인 불편시설 보수(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제외, 부수적인 공사는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청) → 군(접수) → 군(조사/결정) → 대상자 통보

6. 기타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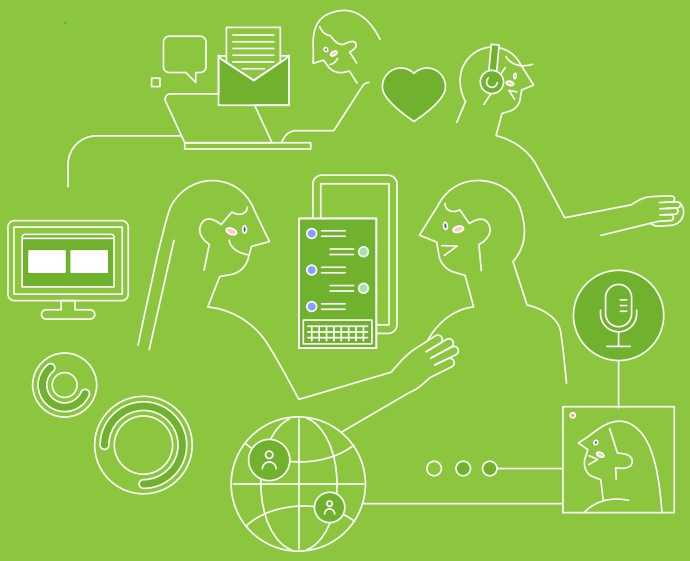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1】

◇ **지원대상** :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고용노동부 '2024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상 취업취약계층[①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결혼이민자, ⑤여성가장, ⑥성매매피해자,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북한이탈주민, ⑨위기청소년, ⑩갱생보호대상자,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노숙자]

◇ **근로시간** : 주 30시간 이내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

◇ **지원내용** : 1시간 9,860원 ※ 주·월차수당 별도지급

◇ **사 업 장** : 21개소 (지역공동체 3개소. 공공근로 18개소)

◇ **모집인원** : 50명 (상반기 26명, 하반기 24명)

◇ **사업기간** : (상반기)2월 ~ 6월, (하반기) 7월 ~ 11월(예산 잔액에 따라 조정)

◇ **접수기간** : 상반기 1월중 / 하반기 6월중 예정

◇ **제외대상**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최근 3년간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 ·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주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참여가능하나, 사업으로 인해 소득발생 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구직등록증,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조회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자활근로사업 지원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1】

◇ **지원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유형**

수행기관	유 형	대상사업	사 업 내 용
장수지역 자활센터	시장진입형	재활용	•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한끼국수	• 국수전문매장 운영
	사회서비스형	장수표고	• 표고버섯배지 생산판매 / 버섯재배 판매
		한누리목공방	• DIY 공방 운영 및 목공예품 판매
		푸르미영농	• 쌈채류, 기타작물재배류, 노지
		장수클린	• 청소사업 ※2024년 신규사업 예정
		누리도움	• 원어민 강사 / 급식도우미
읍·면사무소	복지도우미		• 읍 · 면 복지담당업무 보조
	근로유지형		• 읍 · 면 환경정비 사업 등 수행

◇ **급여내역 및 근무형태**

(단위 : 원)

구 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1,930/65,930	54,200/58,200	31,800
급여단가	57,930/61,930	50,200/54,200	27,80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506,180	1,305,200	722,80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주·월차수당 지급

◇ **신청절차**

신청 (읍·면) > **조사 (군)** > **대상자 결정 통보 (군)** > **상담 (읍·면)**

①자활역량평가 80점 이상 - - - - -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지원센터)**

②자활역량평가 80점 미만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배치** 〈군〉 > **자활사업 시행 참여자 관리 지역자활센터** 〈자활센터〉 > **자활예산지원 시행기관 감독** 〈군〉

청년취업 지원사업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4】

◇ **지원대상** : 장수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 **지원기준** : 도내 거주 18 ~ 39세 미취업자 취직 시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1인당 70만원씩 12개월간(수습 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9개월)
- 장려금 지원 :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100만원, 총 300만원 지급

◇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ex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단, 상시근로자 가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간**

- 실시기업 : 매년 1월 중 참여기업 정기모집 공고 시 신청(※ 신청 미달 시 수시접수)
- 참여청년 : 실시기업 신규채용 모집 시(수시) 신청, 취업약정서 체결

◇ **신청방법**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방문신청

◇ **신청절차**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참여기업과 장수군 간 협약체결 → 근무 및 정규직 전환

여성 취업 지원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350-2106】

◇ 장수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위　　치 : 장수군여성문화센터(장수읍 신천로 81, 여성청소년문화센터 내 2층)
- 취업상담사 : 2명
- 지원내용
  - 취업상담(1:1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 경력단절 예방사업(취업자 간담회, 직장문화개선 워크숍,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 취업알선(개인맞춤형 취업알선, 새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인턴제)
  - 이동상담, 동행면접 사후관리, 여성친화기업 발굴
- 연락처 : ☎ 351-8798, 8799

◇ 새일여성인턴 및 결혼이민인턴십 지원사업

-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기업에 매월 80만원씩 지급(80만원 *3개월)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80만원 지급(80만원 1회)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 60만원 지급(60만원 1회)

◇ 여성친화기업 MOU 체결 시 기업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 지원기준 : 1개 업체
- 지원내용 : 기업환경개선자금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여성휴게실, 화장실 등)

◇ 경력단절 예방사업

- 취업자 간담회
- 경력단절 예방 상담 및 컨설팅
- 직장적응 및 복귀프로그램
- 직장문화 개선 워크숍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2】

◇ **지원대상** : 장수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 **지원기준** : 도내거주 40세 ~ 69세 이하의 미취업자 채용 시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1인당 70만원씩 12개월간(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9개월)
- 장려금 지원 : 6개월후 50만원, 12개월 후 50만원, 24개월후 100만원, 총 200만원 지급

◇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ex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단, 상시근로자 가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간**

- 실시기업 : 매년 1월 중 참여기업 정기모집 공고 시 신청(※ 신청 미달 시 수시접수)
- 참여청년 : 실시기업 신규채용 모집 시(수시) 신청, 취업약정서 체결

◇ **신청방법**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방문신청

◇ **신청절차**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참여기업과 장수군 간 협약체결 → 근무 및 정규직 전환

장수군 로컬JOB센터 운영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350-2191】

◇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준비길 12 2층(장수군 산림조합 후문)

◇ **이용대상** : 구직 및 취업 희망자

◇ **이용시간** : 매주 월 ~ 금, 09:00 ~ 18:00

◇ **이용절차** : 전화 또는 내방

◇ **주요프로그램**

- 직업상담 (1:1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 구인 및 구직신청
- 채용행사, 취업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협력망 구축 및 홍보
- 도농상생형 농가일자리지원 : 신청 농가에 간식비 등 지원, 도시근로자 교통비 지원

◇ **구성인원** : 10명(센터장 1명, 팀장 2명, 컨설턴트 7명)

◇ **홈페이지** : http://jeonbuk.work.go.kr/jangsu(포털사이트에 “장수군 잡센터” 검색)

◇ **문 의 처** : 장수군 로컬JOB센터 ☎ 352-7898

자격 취득 및 실습반 운영지원

【전북유니텍고등학교 ☎ 351-2448】

◇ **지원대상** : 장수군민

◇ **지원기간** : 2024. 3월 ~ 8월

◇ **지원내용** : 지역주민 중장비 자격증 취득반 및 생활용접, 제과제빵 실습반 운영 지원

◇ **신청방법** : 전북유니텍고등학교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전북유니텍고등학교(☎ 063-351-2448)

6. 기타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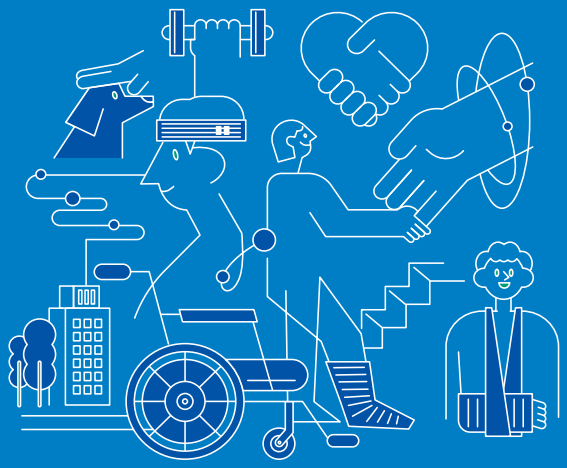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350-2091】

◇ **지원대상**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

◇ **지원기준**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보건복지장관이 고시)
-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 경감(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 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 18세미만인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 ~ 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추가)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 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대한 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진단기준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선천성이상아 중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 **지원내용** : 대상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 시 체중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접수

◇ **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퇴원전 신청 시 중간진료비 영수증)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진단서 상에 입·퇴원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983】

◇ **지원대상**

- 아토피피부염(상병코드 L20)으로 진단받은 장수군 거주자
- 의료비(보습제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보습제 지원 : 보건의료원 소아과 등록 관리자

◇ **지원내용**

- 진단서에 L20(아토피피부염)으로 질병명이 있는 경우
  (아토피피부염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아토피피부염 진단 이후 치료 관련 의료비)
- 의료비 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 및 검사료 등),
  치료제 및 보습제 구입비(1인당 연 20만원 한도) 등
- 의료비 지원 : 연 1인당 500천원 범위 내, 등록 최초 지원 후 5년까지
- 보습용 제품 구입비 지원 : 1인당 연 20만원 한도, 등록 최초 지원 후 5년까지
- 보습제 지원 : 보건의료원 소아과 내원 2개월에 1개씩 지원

◇ **주의사항**

- 의료비 지원(보습제 구입비 지원)과 보습제 지원은 별도로 지원함
- 예산에 따라 지원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아토피 등록신청서, 진단서(상병코드 필히 기재), 약제비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1】

◇ **지원대상** : 지역 내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응급실 또는 입원환자가 응급상황 발생으로 상급의료 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 차량(의료기관 구급차 및 민간이송업체) 이용경비 지원

◇ **지원금액** : 1건당 최대 150,000원 ※거리별 지급기준표 의거

◇ **지원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보건의료원에 서류 제출
- 보건의료원 : 서류 검수 후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이송지원금 지급 ※ 예산 소진시 까지
- 구 비 서 류

이송지원금 신청서	- 신청서 작성
본인 또는 보호자 확인 서류	- 환자본인 : 주민등록본, 환자 신분증 사본 - 보 호 자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원대상 충족 확인 서류	- 소아·청소년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증명서
구급차 이용 확인 서류	- 이송처치료 영수증 - 출동 및 처치기록지
지급 관련 서류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350-2625】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권자** : 암환자 또는 보호자 및 관계인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 접수

◇ **지원내용**

구 분	소아암	성인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지원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이 지원기준 에 적합한자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함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당연선정(만 18세 이상) -등록신청서 연 1회 제출
지원 금액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조혈모세포이식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 항목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지원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지원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350-2625】

◇ **지원대상** : 장수군민 중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자

① 법·고시 질환 1,272종(희귀질환 1,248개, 중증난치질환 24개) 환자

②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 **지원기준** : 환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 재산 기준 적합자

(단위 : 원)

환자가구규모 \ 환자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일반기준(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 분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건강보험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272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	○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간병비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방문 접수

장애인 복지서비스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3】

장 애 인 등 록 절 차	수행기관
(1) 장애인진단 신청 - 장애진단 의뢰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읍·면
(2) 장애인진단 - 발급받은 장애진단 의뢰서를 의료기관에서 제출 후 장애진단 받음 - 장애유형별로 장애진단지,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등급심사 구비 서류를 발급 받음	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접수 - 장애유형별로 구비서류 확인 후 행복e음 전산망 등록 - 국민연금공단에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장애정도 심사 요청 및 구비 서류 송부(우편)	읍·면
(4)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유형별로 구비서류 확인 후 서류보완요청 및 장애정도 심사실시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자문회의에서 정도결정 및 결과통보	국민연금 공단
(5) 장애정도심사 결과 접수 및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 장애정도심사 결과 행복e음 전산망 등록 및 민원인에게 통보 ※ 장애정도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절차(2 ~ 4번 반복) 안내 - 행복e음 전산망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읍·면
(6)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 접수된 장애인 복지카드 생산 및 해당 지자체 및 우체국으로 배송	한국 조폐공사
(7) 장애인 복지카드 배부 - 군청으로 송부된 장애인 복지카드 읍·면으로 배부(기관배송) - 우체국에서 신청 주소로 배송 후 교부(우편개별배송)	군·우체국
(8)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등록 - 배부된 장애인 카드를 대상자에게 교부(기관배송)	읍·면

※ 장애진단지 :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로 장애등급은 미기재

※ 검사결과지 : MRI, CT, X-RAY, 청력테스트지 등 장애유형별 전문 검사결과서

※ 진료기록지 : 병원 입원·통원 치료기간 동안의 진료일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3】

◇ 장애관련 연금 및 수당

◦ 장애인연금 :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액(단독130만, 부부208만) 이하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종전 1급 ~ 3급(중복))

◦ 장애수당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종전 3급 ~ 6급)

◦ 장애아동수당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기초수급자 장애인(A),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B)

◦ 지원기준

· A : 진료비 급여액의 15% 지원(잔여 85% 의료급여에서 지원)

· B : 진료비 급여액의 14% 지원

◦ 지원절차 : 의료급여 이용 →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통보 → 건강보험공단 접수/지급

◇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등록진단비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4만원, 기타일반장애 1만5천원)

◦ 검사비

· 지원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의무재판정,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 직권재판정 등으로 진단 및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지원내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3】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6세 이상)

◇ **지원기준** : 기본급여 – 월45~480시간 / 특별지원급여 – 만6개월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지원,이동보조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신청절차** : 읍·면신청 → 군 접수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등급결정 → 대상자 결과통보(군)

◇ **제공기관** : 장수군장애인연합회(☎063-351-4967), 장수사회서비스센터(☎063-352-7911)
희망복지장애인활동지원센터(☎063-353-585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3】

◇ **지원대상** :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기준** : 24,220원/1인집중지원서비스, 16,150원/2인그룹, 12,920원/3인그룹
(바우처 지원금에 매칭하는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기반활동 지원

◇ **지원기간** : 보장결정 이후 3년

◇ **신청절차**

신청·접수	의뢰 송부	조사 및 결과 송부	수급자격 심의	대상자 결정 통보
읍·면	군 담당자	국민연금공단,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시군구 담당자

◇ **제공기관** : 나눔과행복사회적협동조합장수군지부 (☎063-352-729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룹형 1:1 지원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3】

◇ **지원대상** :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통합돌봄서비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기준** : 24,220원/월 176시간 이내

◇ **지원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서비스에 참여 가능하도록 주간 그룹형 1:1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 보장결정 이후 3년

◇ **신청절차**

신청·접수	의뢰 송부	조사 및 결과 송부	대상자 심의	대상자 결정 통보
읍·면	군 담당자	국민연금공단,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도서비스 조정위원회	군 담당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3】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원기준** : 1종·2종 보조기기별 지원 기준액 지원

◇ **지원내용** : 의지기,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60개 유형

분 류	지 원 유 형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 각종 의지기 및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 **주의사항**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 불가
(단, 뇌병변 및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 가능)

◦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 보조기기별 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급

◇ **신청절차**

①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② 신청(읍·면) : 본인 및 부양의무자(제작·판매업소 대행 불가)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확인(군) : 적격·부적격 여부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
④ 보조기기 구입(신청인) :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⑤ 보조기기 검수 :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검수 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소 대행 불가
⑥ 구입비용지급 청구 : 본인 및 가족, 법정대리인
⑦ 구입비용 지급 : 구입비용청구자에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 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보건사업과 치매·정신통합센터 ☎ 350-2670】

◇ **지원대상**

-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상병코드 F00~F03, G30, G300~G309, G31, G31.82, F10.7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 지원

* 진료비, 약제비 지원 단, 검사비 제외

◇ **주의사항**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선정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치매·정신통합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접수처 비치) / 진단서(상병코드 필히 기재)
- 치료약 처방전(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치매 어르신 통장사본(대상자 명의가 아닐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치매어르신, 보험가입자 본인 각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영양 골(骨)인(in)사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350-2637】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장수 군민 중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자 30명
① 국가건강검진(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 관리(일반질환의심)'로 판정된 자
② 장수군보건의료원 골밀도 검사 결과 'T-score 〈 -1.0'인 자

◇ **지원기준** : 독거노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부여

◇ **지원기간** : 2024. 2. ~ 2024. 11.(10개월)

◇ **지원내용** : 월 1회 보충식품 제공(식품군별 Ca함유량이 높은 식품) 및 교육 제공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3층 영양사업실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골밀도검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350-2626】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노인 의치보철(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지원
- 사후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5년간)
- 노인 불소도포, 치면세정술, 치석제거 등 구강관리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만료 시까지

◇ **신청권자** : 본인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구강보건실(구관 2층) 방문접수

◇ **신청서류** : 노인의치(틀니)지원 신청서 1부(방문작성)

◇ **신청절차** : 대상자 파악(보건의료원) → 1차 구강검진(보건의료원) → 대상자 선정 → 시술(치과의원) → 시술료 지불(보건의료원)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및 치석제거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4】

□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완전 무치악 환자 및 부분틀니 대상자

◇ **지원기준**
- 7년 주기로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건강보험에서 완전틀니 시술 후 7년 이내 지원 불가)
- 무상보상기간 운영 : 3개월 이내 6회에 한하여 무상수리

◇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임플란트(평생 2개)
- 노인틀니 : 1종-비용의 95% 지원(5% 자부담), 2종-비용의 85% 지원(15% 자부담)
- 임플란트 : 1종-비용의 90% 지원(10% 자부담), 2종-비용의 80% 지원(20% 자부담)

◇ **신청절차**
신청인이 치과에 신청 → 군 결정 처리

□ 치석제거 지원

◇ **지원대상** : 20세 이상 후속 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지원내용** : 연 1회(의료급여 일반 원칙 적용)

◇ **신청방법** :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신청인이 치과에 신청)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연령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 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장수군에 1년 이상 거주자
-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무릎 2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지원주체** : 장수군

◇ **주의사항** :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함.

◇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읍·면 사무소, 보건지소·진료소에 지원신청서 접수 → 장수군 보건의료원 적격자 심사 결정 통보 → 신청인 수술비 청구[1] → 장수군보건의료원 수술비 지원[2]

[1] 수술비 청구 : 대상자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후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보건의료원에 수술비 청구

[2] 수술비 지원 : 본인부담금 청구 후 수술비 지급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 수술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60세 이상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연령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액 : 한쪽 무릎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지원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

◇ **주의사항** :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함.

◇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에 지원신청서 접수 → 재단에 적격자 추천 의뢰 → 재단 적격자 심사 결정 통보 → 신청인 수술비 청구[1] → 재단 수술비 지원[2]

[1] 수술비 청구 : 대상자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2] 수술비 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대상자에게 수술비 송금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2】

◇ **지원대상**

- 연령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질환 :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지 원 액 :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 개안수술 지원 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

◇ **지원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 **주의사항** :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함.

◇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에 지원신청서 접수 → 재단에 적격자 추천 의뢰 → 재단 적격자 심사 결정 통보 → 선정자 수술 전 사전협의[1] → 재단 수술비 청구[2] → 재단 수술비 지원[3]

[1] 수술 전 사전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2] 수술비 청구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3] 수술비 지원 : 재단은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안과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정신건강토탈 케어서비스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3】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정신장애인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자기관리 및 일상생활 향상 서비스,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 **서비스단가** : 200천원

◇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

◇ **지원액/본인 부담액** : 180천원/20천원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청) → 군(접수) → 군(조사/결정) → 대상자 통보

◇ **제공기관** : 정신건강자립지원센터(☎ 063-352-4074)
사회적협동조합 마음(☎ 063-353-0498)

※ 참고사항(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월평균 소득(120%)	2,674	4,419	5,657	6,875	8,034
월평균 소득(140%)	3,119	5,155	6,600	8,021	9,37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3】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서비스 등 유사사업 중복 참여 제한),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한 대상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이동보조, 신체활동 등 지원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바우처지원액	본인 부담금(월)	바우처지원액	본인 부담금(월)
월 24시간	412,800	없음	450,470	13,930
월 27시간	388,030	24,770	436,540	27,860

※ 추가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

◇ **제공기관** : 장수사회서비스센터(☎ 063-352-7911)

◇ **제공인력 기준**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신청절차** : 신청(읍·면) → 신청자 자격·욕구·건강조사(읍·면) → 조사결과 전송(읍·면 ⇒ 군)
→ 대상자 선정 및 등급결정결과 통보(군 ⇒ 신청인), 바우처 카드 신청(군 ⇒ 금융기관)
→ 카드 발송(금융기관 ⇒ 신청인) → 카드 수령 및 제공 기관과 계약 체결(신청인)
→ 서비스 이용

7. 장수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지원

"장수군민이라 행복합니다"

군민안전보험 지원

군민안전보험이란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

◇ **지원대상** : 장수군민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보험료 : 장수군이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장수군민 전체 자동가입(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 포함)

◇ **보험금 청구** :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문 의 처**

-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 1644-9666(2)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 063-350-2486

◇ **보장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구 분	보장내용	피보험자 범위	보장 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3,000만원 한도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 ☎ 350-2483】

강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3,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3,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 15세 이상	1,5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장수군민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65세 이상	2,000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제한없음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장수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20만원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 ☎ 350-2483】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소재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

◇ **지원근거** :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지원내용**

피해면적	지원액 (단위 : 천원)	비고
- 주택 전체면적의 70% 이상 또는 잔존 부분보수 후 재사용 불가능한 경우	5,000	
- 주택 전체면적의 30% 이상 70% 미만	3,000	
- 주택 전체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2,000	

◇ **신청기간** :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권자** : 본인(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피해주민 가족이나 거주지 이장)

◇ **신청방법** : 주택화재 피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류** :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신청절차** : 신청(읍·면) → 거주확인 및 서류 1차 검토(읍·면) → 2차 검토 후 선정 결과 통보(군)

전입세대원 지원

【기획조정실 정책팀 ☎ 350-2042】

◇ **지원대상** : 관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최초 1회만 지급하며,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급 제외)

◇ **지원기준** :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장수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세대원당 10만원 지원(장수사랑 상품권)
(지원대상 충족일자 기준(6개월 경과) 익월 일괄 주민등록지로 유가증권등기 발송)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자격 충족일(거주6개월)+신청기한(6개월)을 포함한 전입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신청가능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신청절차** : 신청(읍·면) → 거주확인 및 서류 1차 검토(읍·면) → 2차 검토 후 선정 결과 통보(군)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기획조정실 정책팀 ☎ 350-2042】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지원기준** :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장수군에 신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조례공포일(2019.12.2.)전에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자 제외

◇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300만원 분할(2년간)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 시) : 1백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시마다 : 각 1백만원 / 2회

◇ **신청기한** : 지원자격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초본의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신고일 기준)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지원자 명의)

◇ **신청절차** : 신청(읍·면) → 거주확인 및 서류 1차 검토(읍·면) → 2차 검토 후 선정 결과 통보(군)
- 최초 신청 이후, 경과분은 별도 신청 없이 기한 도래 시 군에서 자체 검토 후 지급 결정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3】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월 19,500원) 이하인 자
-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세대
- 한부모 가족 및 조손세대

◇ **제외대상** : 정부 또는 장수군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

◇ **지원방법** : 대상자 명단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 확인 후 보험료 일괄 납부(군)

◇ **주의사항** : 조사 및 변동 사항 관리(군)

※ 자료의 처리를 일괄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누락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바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 ☎ 350-2663/2664】

◇ **지원대상**
- 100% 감면 :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50% 감면 : 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 **지원내용** : 100% 감면 : 예방접종비 무료 / 50% 감면 : 42,050원

◇ **이용방법**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의료지원과 감염병관리팀 ☎ 350-2663/2664】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성인(임신부 제외)

◇ **지원내용** : 조달 구입가 접종(Tdap : 22,000원, Td : 13,000원)

◇ **이용방법**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350-2635】

◇ **지원대상** :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 **지원내용 1.** 금연클리닉 등록 및 서비스 지원(맞춤형 금연보조제 지원 등)

금연 기간	대면상담	검사기간	검사 내용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요검사		모발검사	
			검사 횟수	금연성공 기준	검사 횟수	금연 성공기준	검사 횟수	금연성공 기준
4주	대면상담(1회 이상)	7일 이내	1회	7PPm 미만	-	-	-	-
12주	대면상담(1회 이상)	7일 이내	1회	7PPm 미만	-	-	-	-
6개월	대면상담(1회 이상)	7일 이내	1회	7PPm 미만	1회	음성	-	-
12개월	대면상담(3회 이상)	30일 이내	1회	7PPm 미만	1회	음성	1회	2ng 미만
18개월	대면상담(3회 이상)	30일 이내	1회	7PPm 미만	1회	음성	1회	2ng 미만
24개월	대면상담(3회 이상)	30일 이내	1회	7PPm 미만	1회	음성	1회	2ng 미만

◇ **지원내용 2.** 금연 성공자

- 금연 6개월 : 축하선물 증정
- 금연 12개월 이상 : 금연 성공 지원금 단계별 지급(19세 이상)
  - · 등록일로부터 금연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성공자
  - · 12개월 – 20만원, 18개월 – 50만원, 24개월 – 8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또는 장계건강생활센터 방문 접수

장수군 주민도움센터 운영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2】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노인·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 기타 시장·군수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등

◇**지원내용** : 무상지원

- 민원업무 신청·전달, 물품 배달, 시장보기, 긴급상황 시 방문도움
- 생활용품 경수리,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 등

◇ **운영주체** :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

◇ **수행인력** : 3명(사무원 1명, 수행원 2명)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27-9

◇ **연 락 처** : ☎ 063)351-7072, 063)784-7070

◇ **신청방법** : 주민도움센터로 유선 신청

◇ **신청절차** : 서비스 신청 → 상담(유선 또는 가정방문) → 서비스 수행 및 연계 지원

행복 콜서비스 사업

【건설교통과 교통팀 ☎ 350-2567】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지원내용** : 거주마을 → 거주 읍·면 소재지 운행 지원

◇ **이용시간** : 매일 07: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접수 마감 17:30)

◇ **신청방법** : 콜센터를 통한 수시 예약 접수 및 배차
☏ 353-1353 장수읍 ☏ 353-1354 장계면·계남면
☏ 351-3000 산서면·번암면 ☏ 351-3001 천천면·계북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3】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명의(또는 공동명의)의 등록된 차량

◇ **지원내용** : 보행성 장애여부에 따라 자동차 주차가능 또는 불가능표지 발급, 자동차 표지 발급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가능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운전면허

◇ **신청절차** : 신청·등록(읍·면) → 전산연계(한국도로공사) → 수령(읍·면) → 발급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350-2364】

◇ **지원대상** : 20세 이상 ~ 75세 미만(1950.1.1.~2003.12.31.)인 여성 농입인

◇ **지원기준**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 농업 외 타분야 사업자등록자 및 전업적 직업 종사자도(전업농 + 겸업농)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촌지역 외 거주자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 전 업종 사용 가능 〈단, 의료기관 및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외*〉

* 제외업종 :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유사의료업, 공공요금, 악세사리점, 귀금속점, 시계전문점,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안마시술소, 유흥기타,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상품권, 성인용품, 면세점, 게임방, 보험료 등

◇ **지원방식** : 1인 연간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지급(당해 연도 말까지 사용)

◇ **신청기간** : 연중 2. 28.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절차**

① 서비스 신청	② 접수 · 및 상담	③ 대상자 확정 · 통보	④ 카드신청 (카드사, 은행)	⑤ 카드발급	⑥ 구매 (오프라인)
이용자	읍·면	군	이용자	카드사	이용자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 지원

【민원과 지적팀 ☎ 350-2265】

◇ **지원대상** : 건축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주택을 신축한 자

◇ **지원기준** :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급(부부 중복 지급 금지)

◇ **지원근거** :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지원내용** : 주택 신축과 관련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 **신청방법** :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팀 방문신청 → 주소지 확인, 건축준공 여부 확인, 지적측량비 확인 → 보상결과 통보(군)

◇ **신청서류**

- 장수군 지적측량비 보상금 신청서(민원과 구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건축준공서류, 지적측량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희망하우스 빈집활용 임대지원

【민원과 마을경관팀 ☎ 350-2296】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비어있는 활용 가능한 빈집

◇ **지원기준** : 연중 사업량 2동

◇ **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동당 최대 25백만원(자부담 5% 이상) 지원

◇ **주의사항**

- 빈집 리모델링 완료 후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간 의무 무상임대
- 입주대상-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학생(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 주거형태-주거공간(임대주택)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 **신청방법** : 민원과 마을경관팀 방문상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350-2533】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

◇ **지원내용** : 라돈측정기 2일 대여

◇ **지원방식** :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장비 수령 및 반납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총무팀 방문신청

◇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화장장려금 지원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350-2115】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장수군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지원내용** : 1구당 화장장 사용료 최대 50만원 개인별 계좌 입금
※화장료 참고(전주시 70천원, 익산시 300천원, 남원시 500천원)

◇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신청 → 대상자 결정 및 지원(군)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호국보훈수당 지급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350-2071】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 전상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 · 18민주유공자, 공상 · 순직 공무원(위 대상자 중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1인
- 독립유공자(본인이 사망한 경우 수권자)

◇ **제외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 장수군 관외 지역 전출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 1인 월 13만원 개인별 계좌 입금
– 그 외 보훈대상자 : 1인 월 11만원 개인별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유족 1인에게 30만원 일시불 지급

◇ **지원방식** : 신청이 있는 달부터 수당 지급(매 분기 말 월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 또는 장수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보훈단체사무실, 주민복지과 비치), 신분증·통장사본, 국가유공자등 확인서(전북동부보훈지청 발급)

◇ **주의사항** : 본인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전주승화원 이용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350-2111】

◇ **전주승화원(화장시설) 이용 협약**

장수군에서는 화장장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23년 4월 18일 전주시와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수군민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용안내** (2023. 7. 13일 부터)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이용금액	30만원	7만원	
화장장 예약	오후 가능	오전, 오후 가능	

◇ **화장장예약**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 예약 (https://www.15774129.go.kr/)

◇ **이용문의** : 전주승화원 민원실 (☎ 063-239-2690~2)

누리파크 어린이생활문화센터(키즈카페) 운영

【산림공원과 공원레저팀 ☎ 350-2451】

◇ **시 설 명** : 장수군 누리파크 어린이생활문화센터(키즈카페)

◇ **시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누리파크 일원

◇ **주요시설** :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작은도서관, 대관시설, 무인체험시설 등

연번	명칭	주요내용	비고
1	실내 체험놀이터	플레이짐, 닌자 크로스, 트럼펠린, 볼풀장 등	유료
2	작은 도서관	그림책, 학습만화, 권장도서 등	무료
3	특화공간	무인체험만들기 공간	유료
4	마루공간	생일파티 등 파티룸 대관시설	유료
5	휴게공간	이용객 쉼터	무료

◇ **이용대상** : 3 ~ 12세 유아 및 어린이 (36개월 미만 이용 불가)

◇ **이용요금** : 2,000원 (보호자 및 인솔자 무료)

◇ **이용시간** : 10:00 ~ 17: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이용차수	이용시간	화~금요일	토~일요일
1차	10:00 ~ 11:40(100분)	단체	개인
2차	13:20 ~ 15:00(100분)	단체 및 개인	개인
3차	15:20 ~ 17:00(100분)	단체 및 개인	개인

◇ **이용방법**

- 개인 : 온라인 신청(네이버), 현장접수

* 현장접수 시 인원제한(회차당 최대 50명)에 따라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음

- 단체 : 사전 전화예약(063-351-6431)

◇ **이용 안내사항**

- 이용 시 보호자 동행 필수(보호자는 1명만 입장 가능)
-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자 책임 원칙
- 예약 후 사전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제한(당일 환불 불가)
- 기관 사정에 따라 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실내놀이터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합니다.(단, 물은 반입가능)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

【건설교통과 교통팀 ☎ 350-2567】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 동반 가족 및 보호자

◇ **지원내용**

구분		거리	요금	비고
권역 내 요금	기본요금	2km	700원	각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의 50% 평균 적용
	주행요금	km당	100원	상한액은 탑승지자체 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
권역 외 요금	기본요금	2km	700원	상한액은 탑승지자체 시외버스 요금기준 2배 이하 ※ 현행기준(131.82원/ km × 2)
	주행요금	700m당	100원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이용자 부담		
대기료	권역 외	30분당 2,500원(1시간 무료)		
	전북특별자치도 외	30분당 2,500원(2시간 무료)		

◇ **신청방법**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 이용대상자 등록 후 광역이동지원센터(227-0002)에 콜 신청

◇ **문 의 처**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 063-353-8245)

시설안내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 350-2166】

◇ **이용대상** : 장수군민
◇ **이용기간** : 2024. 3 ~ 11월
◇ **운영내용** : 지역주민 외국어 교실(영어)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352-336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 350-2166】

◇ **이용대상** : 장수군민
◇ **이용기간** : 2024. 5월 ~ 12월
◇ **운영내용**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읍·면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장수군 통합예약 시스템 인터넷 신청(http://www.jangsu.go.kr/reserve/index.jangsu)
◇ **문 의 처**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3-350-2166)

여성문화센터 운영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350-2106】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1 (장수군 여성 · 청소년문화센터 2층)
◇ **이용대상** : 장수군민
◇ **이용시간** : 월 ~ 금 09:00~18:00
◇ **운영내용** : 여성 취미 · 소양 교육 및 취 · 창업 교육 등(분기별 및 특강프로그램)
◇ **신청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교육) 신청 접수
(http://www.jangsu.go.kr/reserve/index.jangsu)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350-2101】

◇ 장수군 가족센터 현황

○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5

○ 주요공간

- 1층 : 사무실, 교육장, 조리실
- 2층 : 센터장실, 정보화교실, 육아정보나눔터, 도서실, 언어발달교실, 상담실

◇ 2024년 가족사업안내

구 분	프로그램	비고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찾아가는 부모교육, 생애 주기별 부모교유, 아버지 역할인식 등), 어머니 여가문화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 부부교육, 다문화자녀 마을학당, 다문화 가족 인권 및 가정폭력·아동학대예방 교육, 자조모임(결혼이민자·지역주민 여성통합 자조모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다문화 가족교육, 가족상담, 다문화 자녀성장지원(마을학당 자녀학당,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이중언어교육 등)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	지역주민 피부과 무료 진료, 다문화자녀 결연 후원	
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 프로그램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1인가구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고향나들이 사업, 고국에 정보내기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가족봉사단운영, 공동육아나눔터(초등돌봄교실, 자녀돌봄 품앗이, 상시프로그램운영), 가족 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가족센터 홍보사업, 여성통합문화탐방),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가족캠프, 가족요리대회),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다문화 이해교육), 명륜당 북소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지원, 다문화 어울림문화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베트남,중국어)	

◇ **문 의 처 :** 장수군가족센터 ☎ 063-352-3362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 353-8288】

◇ **위　　치**

- 장수군노인복지관 : 장수읍 노하 3길 16
- 장계면노인복지관(분관) : 장계면 백화로 60

◇ **이용대상** :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이용시간** : 매주 월 ~ 금, 09:00 ~ 18:00

◇ **이용절차** : 내방 → 회원등록 →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 회원증 발급

◇ **주요시설** : 식당, 컴퓨터실, 당구장, 탁구장, 강의실, 휴게실, 서예실, 회의실, 건강증진실, 강당 등

◇ **프로그램** : 풍물, 노래교실, 고전무용, 서예, 요가, 컴퓨터, 난타, 라인댄스, 색소폰, 하모니카, 청춘체조, 국선도, 문인화, 건강체조, 탁구, 당구, 태극권 등

◇ **연계프로그램** : 인근 경로당과 연계하여 여가프로그램(건강교실,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등)

◇ **건강증진실** : 러닝머신, 사이클, 안마의자, 안마매트, 벨트마사지기, 트위스트머신 등

◇ **식당운영**

- 이용시간 : 12:00 ~ 13:00(중식)
- 이용요금 : 2,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 **셔틀버스 안내**

- 노인복지관 전용 무료 순환버스 운행(일 1회 왕복 운행)
  (www.jadwc.or.kr – 홈페이지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참조)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 350-2166】

성인문해교육이란 ?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실현을 위하여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

◇ **이용대상** : 장수군민
◇ **이용내용** : 비문해대상 맞춤형 한글교육
◇ **이용기간** : 2024. 3월 ~ 12월
◇ **이용절차**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방문신청
◇ **문 의 처**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063-353-8286)

장애인복지관 운영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2】

◇ **위　　치** : 장수군 장애인복지관, 장수읍 노하 3길 16
◇ **이용대상** : 장수군 거주 등록 장애인
◇ **이용시간** : 매주 월 ~ 금, 09:00 ~ 18:00
◇ **이용절차** : 내방 → 회원등록 →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 회원증 발급
◇ **주요프로그램**

◦ 이용서비스 : 장애가족문화탐방, 방문재활, 계절학교, 요리교실, 노래교실, 재활치료 등
※ 식당운영 – 12:00 ~ 13:00(중식)
※ 주간 돌봄서비스

구 분	이용정원	이용대상	보호시간	비고
주간 보호시설	18명	등록 장애인	평일 09:00 ~ 16:00	

◦ 방문서비스 : 밑반찬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 기초약품지원, 목욕서비스 등

◇ **문 의 처** : 장수군 장애인복지관(☎ 063-353-8286 / fax 353-8287)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2】

◇ **위　　치** :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수읍 노하숲길 108-9

◇ **이용대상** : 장수군 거주 등록 장애인

◇ **이용시간** : 매주 월 ~ 금, 09:00 ~ 18:00

◇ **이용절차** : 내방 → 상담 →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참여

◇ **주요시설** : 직업재활교육장, 작업장, 샤워실 등

◇ **주요프로그램**

◦근로 장애인 : 직업적응훈련, 옹기제작, 구운소금 판매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작업일정 및 주문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 참여대상 : 만 50세 이하, 드는 힘 20kg 이상, 3 ~ 4시간 이상 서서 작업할 수 있어야 함. 양손사용 및 이동/운반에 따른 작업이 가능해야 함, 한글 및 수개념 등 기초학습에 대한 인지 요함.

◇ **문 의 처** :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 tel 351-9919 / fax 902-9920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2】

◇ **위　　치** : 장수군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장수읍 신천길 79(장수군 사회복지회관)

◇ **이용대상** : 수어통역서비스 이용자 및 수어교육 희망자

◇ **이용시간** : 매주 월 ~ 금, 09:00 ~ 18:00

◇ **이용절차** : 전화 또는 내방 → 상담 → 수어통역 및 수어교육 제공

◇ **주요프로그램**

◦ 행사 또는 문화공연 등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개인수어통역서비스 제공

◦ 수어교육 희망자 단계별 수어교육 서비스 제공

◇ **문 의 처** : 장수군 장애인수어통역센터 : tel 352-5536 / fax 352-5537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2】

◇ **위　　치** : 장수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수읍 신천길 79(장수군 사회복지회관)

◇ **이용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 **이용시간** : 매주 월 ~ 금, 09:00 ~ 18:00

◇ **이용절차** : 전화 또는 내방(예약) → 차량이용시간 배정 → 차량이용

◇ **주요프로그램**

- 민원업무 보조 및 대행 서비스, 직장 출퇴근 보조서비스
- 병원이용 보조 서비스, 장보기, 물건운반 등 서비스 제공

◇ **이용금액**

- 관내 : 무료
- 관외 : 20㎞ 초과 시 택시요금의 50%, 150㎞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전주기준 : 왕복 3시간 기준 20,000원 소요

◇ **문 의 처** : 장수군 생활이동지원센터 : tel 351-4545 / fax 351-9545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주민복지과 사회보장팀 ☎ 350-2081】

◇ **위　　치** : 장수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수읍 신천길 79(장수군 사회복지회관)

◇ **이용대상** :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상담 희망자

◇ **이용시간** : 매주 월 ~ 금, 09:00 ~ 18:00

◇ **이용절차** : 전화 또는 내방(예약)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련 상담

◇ **주요프로그램**

-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 전 도면협의 / 현장상담
- 건물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항 협의 등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이용금액** : 무료

◇ **문 의 처** : 장수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tel 351-4545 / fax 351-9545

사회복지 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 (15)

세부종류	시 설 명	주 소	정원	이용자 수	종사자 수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수노인전문요양원	천천면 장천로 486-26	48	43	32
	백세동안요양원	천천면 진장로 1526-8	28	25	16
	장수밀알공동생활가정	장수읍 교촌로 17	9	9	8
	밀알그룹홈	장계면 장무로 461-6	16	16	12
재가노인 복지시설	밀알노인복지센터	장수읍 교촌로 17		130	27
	하늘내노인복지센터	천천면 장천로 830		62	5
	백세동안노인복지센터	천천면 진장로 1526-8		50	29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번암면 장수로 491		12	6
	산서아가페재가복지센터	산서면 비행로 17-12		9	7
	더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장계면 한들4길 5-1		72	27
	사랑뜰재가노인복지센터	장수읍 시장통길 6		20	1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장수종합재가센터	장수읍 준비길 5		0	1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수군노인복지관	장수읍 노하3길 16		4,332	9
	장계노인복지관(분관)	장계면 백화로 60		802	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장수시니어클럽	장수읍 노하숲길 108-9		-	5

(2023. 12월 말 기준)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팩 스	시설규모 (건물)
장진원	06.02.01	351-6533	351-6544	2099.23㎡
이정수	12.03.06	353-7179	353-0648	663㎡
이병화	14.04.18	351-9797	351-9797	493.76㎡
장대호	20.11.17	351-1925	351-4477	198.83㎡
이병화	14.04.18	351-9797	352-9797	1,568.03㎡
이옥순	02.06.19	352-0648	352-9178	169.05㎡
이정수	12.03.06	353-7179	353-0648	663㎡
양은진	22.07.01	351-8301	351-8301	27㎡
이병옥	22.10.05	353-3700	353-3701	163.2㎡
이강종	22.12.30	351-8845	351-8842	369.15㎡
서보석	23.03.17	351-0491	353-0496	48.9㎡
서양열	22.12.29	938-9830	938-9831	120.6㎡
정호영	14.01.08	353-8286	353-8289	1,746.69㎡
정호영	22.03.22	784-7601	784-7602	1.747.73㎡
김숙희	14.04.04	352-3335	352-3345	138㎡

장기요양기관 현황 (19)

구 분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연 락 처
합 계		19개소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수노인전문요양원)	장진원	천천면 장천로 486-26	351-6533
	노인요양시설	백세동안요양원	이정수	천천면 진장로 1526-8	353-717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밀알그룹홈	장대호	장계면 장무로 461-6	351-19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수밀알공동생활가정	이병화	장수읍 교촌로 17	351-9797
재가급여	방문요양, 목욕, 주간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밀알노인복지센터	이병화	장수읍 교촌로 17	351-979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하늘내노인복지센터	이옥순	천천면 장천로 830	352-0648
	방문요양, 목욕, 주간보호	백세동안노인복지센터	이정수	천천면 진장로 1526-8	353-7179
	방문요양, 목욕	가족사랑 노인복지센터	양은진	번암면 장수로 491	351-8301
	방문요양, 목욕	산서아가페재가복지센터	이병옥	산서면 비행로 17-12	353-3700
	방문요양, 목욕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장수종합재가센터	서양열	장수읍 준비길 5	938-9830
	방문요양, 목욕, 주간보호	더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강종	장계면 한들 4길 5-1	351-8845
	방문요양	사랑뜰재가복지센터	서보석	장수읍 시장통길 6	351-0491
	방문요양,목욕	장수노인복지센터	정연수	장수읍 장천로 162-1	353-2311
	방문요양	장수사회서비스센터	이상엽	장수읍 장수북동길 17	352-7911
	방문요양,목욕	번암노인복지센터	장영환	번암면 노단리 신기길 5	353-3800
	방문요양,목욕	효사랑복지센터	남진경	산서면 신덕길 3	351-8700
	방문요양,목욕	장수평화의집	차복순	산서면 비행로 22	351-4547
	방문요양,목욕	장수행복드림재가센터	최진남	장수읍 교촌로 25	351-9995
	복지용구사업소	그린의료기	김인주	장계면 한들로 93	353-7000

아동복지시설 (7)

세부 종류	시 설 명	주 소	정원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팩 스	시설규모
이용 시설	장수지역 아동센터	장수읍 덕산로 10	29	이선미	2022.10.25	063) 352-1259	063) 352-1259	128.62㎡
이용 시설	다솜지역 아동센터	장수읍 적산로 16, 2층	29	권경주	2006.07.24	063) 353-9054	063) 353-9054	187.22㎡
이용 시설	1318해피존 디딤돌지역 아동센터	장수읍 장천로 220, 2층	29	박천숙	2018.04.02	063) 353-1317	063) 353-1317	171.57㎡
이용 시설	대성지역 아동센터	장수읍 장천로 143	29	임성자	2015.05.26	063) 352-4833	063) 352-4833	231.4㎡
이용 시설	산서지역 아동센터	산서면 신덕길 9-2	29	정영덕	2005.05.02	063) 351-7124	063) 351-7124	206.6㎡
이용 시설	번암지역 아동센터	번암면 동강길 6	29	김영순	2021.04.05	063) 353-3703	063) 353-3703	180.6㎡
이용 시설	한우리지역 아동센터	장계면 성곡길 6	32	박영자	2009.06.30	063) 353-2281	063) 353-2281	162.9㎡

다함께돌봄센터 (2)

세부 종류	시 설 명	주 소	정원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팩 스	시설규모
이용 시설	장수군 계북 다함께돌봄센터	계북면 문성길 4	28	이경미	2022.10.04.	063) 352-2022	-	132.45㎡
이용 시설	장수군 천천 다함께돌봄센터	천천면 송탄로 11	20	김영신	2022.12.12.	063) 352-0649	063) 352-0649	128㎡

장애인복지시설 (5)

세부 종류	시 설 명	주 소	정원	현원	종사자수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팩 스	시설 규모
이용 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수읍 노하3길 16	-	-	19	정호영	13.11.05	353-8286	353-8287	1,321㎡
이용 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장수읍 노하3길 16 (노인복지관 별관 1층)	18	18	4	"	13.11.19	353-8286	353-8287	273㎡
이용 시설	장애인보호 작업장	장수읍 노하숲길 108-9	-	-	5	김균수	13.07.01	351-9919	902-9920	598㎡
이용 시설	생활이동 지원센터	장수읍 신천로 79	-	-	3	이봉애	08.12.03	351-4545	351-9545	70㎡
이용 시설	장애인수어 통역센터	장수읍 신천로 79	-	-	3	배진회	13.12.05	352-5536	352-5537	70㎡

보육시설 (7)

세부 종류	시 설 명	주 소	정원	현원	종사자수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팩 스	시설규모
이용 시설	장수 어린이집	장수읍 덕산로 14-3	72	71	15	박용수	95.03.22	351-2135	351-2140	525.06㎡
이용 시설	승예 어린이집	장수읍 신천로 50	50	19	9	정자영	93.12.29	351-0321	351-0321	529㎡
이용 시설	장수푸른 어린이집	장수읍 노하3길 21	56	30	11	이정은	12.09.28	352-3690	352-3690	620㎡
이용 시설	산서 어린이집	산서면 보산로 1847-3	30	19	6	김영선	98.03.07	351-5720	351-0475	466㎡
이용 시설	장계 어린이집	장계면 한들4길 16	99	57	15	김미경	93.02.18	352-2378	350-2379	748㎡
이용 시설	꿈나무 어린이집	장계면 방천길 5	90	21	8	정칠순	97.03.04	352-0204	353-0204	521㎡
이용 시설	해달별 어린이집	장계면 한들로 147,105호 (아남빌라)	20	18	8	채성숙	15.02.27	351-6777	351-6777	144㎡

정신재활시설 (1)

세부종류	시 설 명	주 소	정원		현원		종사자수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팩 스	시설규모
			입소	이용	입소	이용						
정신 질환자 생활시설	장수보건 복지센터 (법인:장수사랑복지재단, 안만우)	장수읍 장천로 400	15	0	14	0	5	안만우	06.08.10	351-7130	351-7114	117.3㎡

가족센터 (1)

세부 종류	시 설 명	주 소	종사자수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팩 스	시설규모
이용 시설	장수군 가족센터	장수읍 싸리재로 15	19	오인철	2006.05.12	352-3362	352-3363	616.23㎡

여성·청소년문화센터 (2)

세부 종류	시 설 명	주 소	종사자수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팩 스	시설규모
이용 시설	장수군여성·청소년문화센터 * 1층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층 여성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수읍 신천로 81	5	장수군수	2019.01.	351-7942 350-2103 350-2105 351-8032 351-8798~9	351-7944	1,155㎡
이용 시설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계면 방천길 15, 2층	4	장수군수	2023.02.	351-2109 351-2000	351-4431	309㎡

지역자활센터 (1)

세부 종류	시 설 명	주 소	종사자수	시설장	설치일	전화번호	팩 스	시설규모
이용 시설	장수지역 자활센터	장수읍 시장로 27-9	6	김구중	03.04.30	352-7179	351-7199	사무실 : 112㎡ 사업장 : 74,965㎡

2024

알아두면 쓸모있는 장수군 복지사업 모음집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장수읍 350-1221~2, 350-1241
산서면 350-1276/1278
번암면 350-1327~8
장계면 350-1371~2, 350-1392/1394
천천면 350-1426~7
계남면 350-1476/1479
계북면 350-1526/1528

(읍·면 보건지소)

산서면 350-2690~3
번암면 350-2695~8
천천면 350-2700~3
계남면 350-2705~9
계북면 350-2710~3

발행일_ **2024년 3월**
발행처_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발행인_ **장수군수**
편집인_ **이현원 이미란 문지성 김현경**
5563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TEL.063.350.2072 / FAX.063.350.5703 / www.jangsu.go.kr

본 안내서는 각 사업 안내(지침)를 발췌요약한 홍보 내용임으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지원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